

	<b>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</b>	문서번호	3-3-1		
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개정일	2022. 08. 31.		
		페이지	1/3	관리 부서	교무처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칙 및 학사내규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교육과정의 구분)** 교육과정은 교양교과, 전공교과, 교직교과로 구분하고 교양은 필수교과와 선택교과로 구분하며 전공교과는 필수교과와 선택교과, 기초교과로 구분한다.

**제3조(교육과정 편성 기준)** ① 교육과정은 대학의 사명 및 교육목표 실현과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인성과 교양을 함양하고 직업기초능력과 간호전문직능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.

② 교육과정 편성 시 산업체 및 학생 등 수요자중심으로 다양하게 개발하며, 직업기초능력, 핵심역량과 국제적 등가성이 확보된 간호전문단체의 기준, 학습성과 및 기타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교양교과는 전인적 인격 형성에 필요한 교과목과 전공교과를 이수하는데 필요한 기초교과를 필수교과와 선택교과로 편성한다.

④ 전공교과는 학교설치 목적 및 학과운영목표와의 연계성을 유지하여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⑤ 최소이수학점은 교양교과 25학점이상, 임상실습교과목은 22학점 이상으로 편성한다.

⑥ 교직교과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⑦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120학점 이상으로 한다.

**제4조(교과이수)** ① 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며 교내실습은 1학기간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며 교외실습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**제5조(교육과정개발위원회)**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개발위원회를 두며,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, 회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**제6조(교육과정심의위원회)**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두며,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, 회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	<b>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</b>	문서번호	3-3-1		
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개정일	2022. 08. 31.		
		페이지	2/3	관리 부서	교무처

**제7조(교육과정심의)** 개발된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.

**제8조(교육과정개선)**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를 근거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자 할 때는 교양교육센터 또는 전공교실에서 작성한 개편 안을 교무처에 수합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, 교과과정의 개선은 사유발생 시 수시로 실시한다.

**제9조(적용시기 및 경과조치)** ① 매 학년도 교육과정의 개정 및 개편은 당해 년도 해당학년부터 적용한다. 다만, 복학, 유급, 재입학생은 해당학년의 교육과정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교육과정 운영 중 이수과목에 의해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자격증 및 응시자격 부여 등 국가정책이 변경되었을 경우 필요시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**제10조(기타사항)**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교명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	<b>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</b>	문서번호	3-3-1		
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개정일	2022. 08. 31.		
		페이지	3/3	관리 부서	교무처

**부 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